

정 관

제정 1998. 12. 12

개정 2000. 2. 29

2005. 3. 8

2007. 2. 15

2008. 2. 28

2010. 2. 17

2013. 3. 11

제1장 총 칙

제 1 조(목 적) 이회는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의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 연구와 각종 복지 사업을 조성하고 사회복지사업과 활동을 조직적으로 협의, 조정하며 사회복지에 대한 국민의 참여를 촉진시킴으로써 지역사회 복지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2. 15)

제 2 조(명 칭) ① 이회의 명칭은 “사회복지법인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이하 “이회”라 한다)라 한다.(개정 2007. 2. 15)
② 이회의 영문표기는 Jeju Council on Social Welfare로 하고, 약칭은 J·C·S·W로 한다.(개정 2007. 2. 15)

제 3 조(사무소의 소재지) 이회의 주된 사무소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청풍남 8길 12-1(화북1동)에 둔다.(개정 2007. 2. 15, 2008. 2. 28, 2013. 3. 11)

제 4 조(사 업) 이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할지역 안에서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 · 연구 및 정책건의
2. 사회복지에 관한 교육훈련

3. 사회복지에 관한 자료수집 및 간행물 발간
4. 사회복지에 관한 계몽 및 홍보
5. 자원봉사활동의 진흥
6.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의 교육훈련과 복지증진
7. 사회복지에 관한 학술도입과 국제사회복지단체와의 교류
8. 회원단체 상호간의 연락조정 및 협의
9. 사회복지에 관한 정보화사업의 진흥
10. 사회복지자원 개발에 관한 사항
11. 종합사회복지관 및 영유아보육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의 수탁운영
12. 복지위원 및 사회복지관계 위원 등의 육성 및 연락
13.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부문화 조성(개정 2013. 3. 11)
14. 사회복지 소외계층 발굴 및 민간사회복지자원과의 연계협력(신설 2013. 3. 11)
15. 도지사가 위탁하는 사회복지에 관한 업무(개정 2007. 2. 15)
16.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이 위탁하는 업무
17. 이 회의 목적사업 달성을 위한 수익사업의 추진
18. 지역사회에 필요한 사업
19. 그 밖의 이 회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 5 조(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의 관계) 이회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의 협력을 증진하고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위탁하는 업무를 이 회의 사업에 지장이 없는 한에서 수행하여야 한다.

제2장 회 원

제 6 조(회원의 구분) 이회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의 각 호에서 정하는 회원을 단체회원과 개인회원, 평생회원으로 각각 구분한다.

제 7 조(회원의 자격)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회원이 될 수 있다.

1. 지역내 주된 사무소가 있는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사업과 관련있는 비영리법인의 대표자

2. 지역의 경제계 · 언론계 · 종교계 · 법조계 · 문화계 · 보건의료계 · 교육계 등을 대표하는 자
3. 기타 지역사회의 복지발전을 위하여 회장이 추천하는 자

제 8 조(회원 규정) 회원의 가입, 탈퇴와 권리, 의무의 행사방법, 회비 또는 부담금의 징수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개정 2008. 2. 28)

제3장 임 원

제 9 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이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대표이사) 1인
2. 부회장은 3인이상 5인 이하로 한다.(개정 2005. 3. 8, 2013. 3. 11)
3. 이사 15인(회장 · 부회장 포함)(개정 2005. 3. 8, 2013. 3. 11)
4. 감사 2인

제 10 조(임원의 선임) ① 회장 · 부회장 · 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하며, 선거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개정 2008. 2. 28)

② 감사 중 1인은 공인회계사 등 회계감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선임할 수 있다.

③ 선임된 임원에 대하여는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5. 3. 8, 2007. 2. 15)

제 11 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회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08. 2. 28)

② 보궐된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각각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③ 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선임하여야 하며, 임기가 만료되는 임원의 후임자는 임기만료 1월 이전에 선임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11)

제 12 조(자격상실에 의한 퇴임) 이사 또는 감사가 회원의 자격을 잃었을 때에는 퇴임한 것으로 본다.

제 13 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 제3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2. 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원의 취임승인이 취소된 날 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제 14 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이 회를 대표하고, 제반사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 의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시에는 부회장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의 직능에 속하는 사항을 심의 의결 한다.

④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이 회의 재산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비한 점이 있음을 발견하는 때에는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5. 그밖에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 15 조(임원의 대우 등) ① 이 회의 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② 임원에 대하여는 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16 조(명예회장 및 고문) ① 이 회의 건전한 육성 발전을 기하고, 회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학식과 덕망이 있는 인사로서, 명예회장과 고문 약간명을 둘 수 있다.

② 명예회장과 고문은 회장이 추대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각각 취임한다.

제4장 회 의

제1절 총 회

제 17 조(총 회) ① 이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 · 의결하기 위하여 총회를 둔다.
② 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제 18 조(총회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2. 해산에 관한 사항
3. 회비 및 회원부담금의 부과와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신설 2013. 3. 11.)
4.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
5. 사업계획 및 예산 · 결산에 관한 사항(개정 2007. 2. 15, 2008. 2. 28)
6. 이사회에서 부의한 사항
7. 재산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신설 2013. 3. 11.)
8. 그 밖에 회장이 부의한 사항(신설 2013. 3. 11.)

제 19 조(총회의 소집 등) ① 총회는 회장이 소집한다.(개정 2013. 3. 11.)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2월내에 회장이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할 수 있다.

③ 총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장이 회의 개최 3일 이전에 각 회원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제 20 조(총회 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으로부터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총회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총회의 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사가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 21 조(총회의 개의와 의결정족수) 총회는 회원의 2분의1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3. 3. 11.)

제 22 조(의결권의 대리행사)① 회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 또는 표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회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② 단체회원과 개인회원의 대리인은 각각 소속 법인(단체)의 임직원, 다른 회원이어야 하며, 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는 회원의 수는 1인에 한한다.(개정 2013. 3. 11)

③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11)

제 23 조(총회 회의록) 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11)

② 회의록에는 의사의 경과 ·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10인 이상의 의사록 서명인이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11)

③ 회장은 회의록을 이 회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하고, 회의일부터 10일 이내에 이 회 인터넷 홈페이지와 도지사가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3개월간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3. 3. 11)

제2절 이 사 회

제 24 조(이사회의 구성) 이 회에 회장 · 부회장 · 이사로 구성되는 이사회를 둔다.

제 25 조(이사회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

1. 회원 자격상실 및 재가입에 관한 사항(개정 2013. 3. 11)
2. 기본재산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총회로부터 위임된 사항
4. 총회에 부의할 사업계획 및 예산 · 결산에 관한 사항(개정2007.2.15, 2013.3.11)
5. 전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6. 법령 및 정관 또는 규정에서 이사회의 권한 규정된 사항
7. 임원 부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
8. 제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 9. <삭제> (2013. 3. 11)
- 10.<삭제> (2013. 3. 11)
- 11. 결원임원 보선에 관한 사항(개정 2000. 2. 29)
- 12. 추가경정예산에 관한 사항(개정 2000. 2. 29)
- 13. 그밖에 회장이 부의한 사항

제 26 조(이사회의 소집 등)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매회계년도 개시 2월내에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서면요청이 있는 때와 감사의 요청이 있는 때에 소집한다.

③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장이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7일 이전에 각 이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회장은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 안건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는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 27 조(이사회의 개의와 의결 정족수) ① 이사회는 이 정관에서 따로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삭제>(2013. 3. 11)

제 28 조(서면결의) <삭제>(2013. 3. 11)

제 29 조(의결권의 대리행사) ① 이사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 또는 표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이사는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② 대리인은 이 회의 다른 이사이어야 하며, 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는 이사의 수는 1인에 한한다.

③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30 조(이사회 회의록)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11)

② 회의록에는 의사의 경과 ·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참석이사 전원이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11)

③회장은 회의록을 이 회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하고, 회의일부터 10일 이내에 이 회 인터넷 홈페이지와 도지사가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3개월간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3. 3. 11)

제 31 조(회장단 회의) ① 이회는 업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회장과 부회장으로 구성되는 회장단회의를 둘 수 있다.

② 회장단회의는 총회 또는 이사회 의 위임사항과 긴급한 중요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이사회 또는 총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5장 전문위원회

제 32 조(전문위원회) ① 이회의 업무를 사회복지분야별로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위원회를 두며, 위원장은 이사중에서 회장이 선임한다.

② 전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6장 자산 및 회계

제1절 자 산

제 33 조(자산의 구분) 이회의 자산은 목적사업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제 33 조2(기본재산) 이회의 기본재산은 표4와 같다.(신설 2008. 2. 28)

제 34 조(재산의 관리) ① 자산을 매도·증여·교환 또는 담보에 제공하거나, 그 밖의 권리를 포기·의무의 부담 등의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소유부동산의 임대사업과 관련하여 임대보증금 반환에 관련되는 전세권 설정은 이를 완료한 후에 보고할 수 있다.

② 자산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는 법령과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35 조(경비와 유지방법) 이 회의 경비는 회원으로부터 받은 회비·정부보조금·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기본재산에서 발생하는 과실, 수입사업의 수익금과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2절 회 계

제 36 조(회계의 구분 등) ① 이 회의 회계는 목적사업에 속하는 회계와 수익사업에 속하는 회계 및 그 밖의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이 회의 회계처리는 관계 법규에 따로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기업회계 기준에 따른다.

제 37 조(회계연도) 이 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 38 조(잉여금의 처리) 이 회의 매 회계연도 결산 잉여금은 차입금 상환 또는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한 사업을 위한 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제 39 조(사업계획 및 예산) 이 회의 매 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은 회장이 당해 회계연도 개시전에 작성하여 매년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8)

제 40 조(사업실적 및 결산) 이 회의 사업 실적 및 결산은 회장이 회계연도가 끝난 후 2월 이내에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거친 후 매년 총회의 승인을 얻어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11)

제7장 사 무 처

제 41 조(사무처) ① 이 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개정 2005. 3. 8, 2013. 3. 11)

② 사무처에는 업무를 전문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조직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③ 상근부회장(또는 사무처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사무처를 지휘·통할 한다.

(개정 2005. 3. 8, 2013. 3. 11)

④ 상근부회장(또는 사무처장)은 회장이 추천하고 이사회에서 인준한다.(신설2005.3. 8)

⑤ 상근부회장(또는 사무처장)의 계약기간은 3년으로 하고 업무성과에 따라 재계약 할 수 있다.(신설 2005. 3. 8, 개정 2010. 2. 17)

제 42 조(조 직) 사무처의 조직과 업무분장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 43 조(직 원) ① 사무처의 직원은 계약직 상근부회장과 일반직으로 한다.(개정2010.2. 17)

② 직원의 임용 · 인사 · 복무 · 징계 · 신분보장 · 보수 · 여비 등에 관하여는 별도의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8장 수 익 사 업

제 44 조(수익사업) ① 이 회의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8조의 규정과 이 회 정관 제4조 제16호에 의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② 회장은 제1항의 수익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책임자를 둘 수 있다.

(개정 2005. 3. 8)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관한 회계는 이 회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5. 3. 8)

제9장 정관변경 및 해산

제 45 조(정관 변경) 이 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 구성원 3분의 2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얻어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2. 28)

제 46 조(해 산) 이 회를 해산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와 총회의 재적인원 4분의 3의 의결을 얻어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2. 28, 2013. 3. 11)

제 46 조의2(잔여재산의 귀속) 이 회가 해산하는 때의 청산 후 잔여재산은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신설 2013. 3. 11)

제10장 공 고 방 법

제 47 조(공고의 방법) ① 이 회가 법령 및 정관과 기타 총회 및 이사의 의결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이 회의 홈페이지 또는 월간 신문에 실는다.(개정 2008. 2. 28)

② 제1항의 공고내용을 회원에게 통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서면으로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8)

③ 제1항의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제11장 보 칙

제 48 조(준용법규) 이 정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회복지사업법·민법·비송사건절차법 중 법인에 관한 규정과 기타 관계법규를 준용한다.

제 49 조(운영규정)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정관은 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2 조(업무 및 사업과 예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정관의 시행당시 종전의 제주시사회복지협의회가 추진하여 왔던 각종 사업 및 예산은 이 정관에 따라 이 회가 승계한 것으로 본다.

제 3 조(직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제주시사회복지협의회 사무처 직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 4 조(설립당시의 기본재산 등) 이 법인 설립당시의 기본재산, 임원, 법인이 사용할 인장은 표 1내지 3과 같다.

부 칙

이 정관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이 정관은 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제11조 제1항 단서조항은 정관개정 당시 회장의 경우 연임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 ② (적용범위) 제41조의 규정은 이 정관 개정당시 상근부회장의 임기만료시부터 적용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정관은 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 ②(적용범위) 제9조의 규정은 이 정관 개정 당시 임원의 임기만료시부터 적용한다.

(표4)

기본재산의 목록(제33조2 관련)

구 분	소 재 지	규 모	평가가액	출 연 자	비 고
토 지	제주시 화북1동 1112-1	2,014㎡	426,433,000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건 물	제주시 화북1동 1112-1	연면적 597.2㎡	510,982,240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